

분할연금 지급(신청)청구서

※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분할연금 수급권자 (신청구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
	전화번호(주택)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	
노령연금 수급권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혼인 유지기간
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	신청구 여부 [] 신청구	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[] 있음 [] 없음	
급여액 결정·변경내역 수신방법	[] 문서 [] 전자우편주소(e-mail) []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		
지급계좌	일반계좌	금융기관	계좌번호
	전용계좌(압류방지용)	금융기관	계좌번호
※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. 월 급여액이 입 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
※ 급여 선택	발생급여 (발생일)	① (/ /) ② (/ /) ③ (/ /)	선택급여 (발생일) (/ /)
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(주택)	휴대전화번호	수급권자(신청구자)와의 관계
	주소		
	수급권자(신청구자) 확인 (인)	기관장 확인 (인)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청구인 제출서류	1.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분할연금 수급권자(신청구자)의 신분증 사본 1부(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※ 분할연금 신청구제도 :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,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.
- ※ 분할 비율 :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: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,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.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혼인 기간·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색상이 어두운 란과 "※"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.
-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.
- "급여액 결정·변경내역 수신방법"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
※ 급여액 결정·변경내역은 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. 이 경우 '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'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.
-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서식상의 "노령연금 수급권자"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(노령연금 수급 예정자)도 포함합니다.
- "혼인 유지기간"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.
- "선택급여"란은 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.
- "대리인"란은 수급권자(신청구자)의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.
※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,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수급권자(신청구자) 또는 유족은 「국민연금법」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